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6. . . (제 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 소속기관인 부산·인천·제주 출입국·외국인청에 크루즈 승객에 대한 신속한 출입국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5명(6급 6명, 7급 7명, 8급 10명, 9급 12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인 부산·제주 출입국·외국인청에 출입국사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6급 1명, 7급 2명, 8급 1명)을 증원하며, 보호외국인 관리 및 퇴거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4명(6급 5명, 7급 4명, 8급 3명, 9급 2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예산처 및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중 총계 “23,158”을 “23,211”으로 하고, 일반직 계 “23,133”을 “23,186”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2,921”을 “22,974”로 한다.

별표 8 제2호나목에 13) 및 1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크루즈 승객 출입국심사(출입국·외국인청)	35명
14) 보호외국인 관리 및 퇴거전담(출입국·외국인청)	14명

부 칙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7]

법무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54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3,158</u>	<u>23,211</u>	+53
일반직 계	<u>23,133</u>	<u>23,186</u>	+53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22,921</u>	<u>22,974</u>	+53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법사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92